

2021학년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항(마이스터고)

- 2021학년도 입학전형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전형일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남여공학·학과별모집)

모집 학과		금형 설계과	정밀 기계과	자동화 설비과	전기전자 제어과	합 계
학 급 수(학급)		2	2	2	2	8 학급
모집 정원(명)	특별 전형(25%)	10	10	10	10	40 명
	일반 전형(75%)	30	30	30	30	120 명
계(100%)		40	40	40	40	160 명
정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입학대상자 : 정원의 2%(3명) 이내 ○ 북한이탈주민 : 정원의 2%(3명) 이내 ○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 : 정원의 3%(4명) 이내 				

2. 지원 자격(전국단위)

가. 공통사항

- 1) 전국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나.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 구분		인원(명)	지원 자격
정원 내	특별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8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자 (학과별 2명)
	지역인재 우수자 전형	32	평택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일반 전형	120	전국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나 졸업자 (지원자격 가.항(공통사항)에 해당되는 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2%)	3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에 의한 내용에 따른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내로 선발함.) 특례전형으로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이중지원 금지 적용)
	북한이탈주민(2%)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3%)	4	해당 보훈지정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은 일반전형으로 자동 전환하여 전형한다. (단, 동일학과만 해당됨.)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대상자의 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④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 ⑤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⑥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3. 원서 접수

원서 접수 기간	2020년 10월 19일(월) 09:00 ~ 2020년 10월 22일(목) 17:00
원서 접수처	본교(본관 1층 원서접수처)
전형료	10,000원 (원서 접수 시 납부)

-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되고 전형료가 납부 되여야 최종 접수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 우편접수 :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본교 행정실에 도착해야 함
 (전형료미납, 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 전형료 납부 안내 : 인편제출(본교 행정실), 우편환, 계좌이체(농협, 113-01-204264, 평택기계공고)
 미 응시자의 전형료는 환불 처리한다.

4.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온라인제출)

- ※ - 경기도 출신자의 경우, 「업무포털시스템」 안의 「나이스」에서 작성, 접수함.
- 타 시도 출신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 (<http://satp.goe.go.kr>) -
고교입학 - 고입원서작성(타시도)'에서 작성, 접수함.(온라인, 출력물)
-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교에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한다.

나. 추가 제출 서류(출력물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경기도 외 타시도 졸업예정자, 졸업자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출력물(입학원서, 추천서, 서약서등)1부 학교생활기록부 1부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동등학력 인정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특례입학신청서,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반명함판 사진 1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특별 전형 지원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5. 전형 일정 및 장소

구 분	전 형 일 정	장 소
적성 · 소양평가 및 심충면접	2020.10.26.(월) 09:00 ~ 12:20	원서접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내 지정장소에서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소집	2020.11.2.(월) 13:00	본교 지정 장소

6. 전형 방법

가. 특별 전형, 일반전형 공통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 1) 중학교장의 추천서, 서약서,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 등 선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 허가 예정자로 결정한다.

※영역별 배점(일반전형, 특별전형)

단계	내신성적(200점)				⑤ 마이스터 적성 · 소양검사(200점)	⑥ 심충면접(100점)	총점
	① 교과활동	② 출결상황	③ 봉사활동	④학교 활동실적			
반영비율	30%	4%	4%	2%	40%	20%	100%
점수	150점	20점	20점	10점	200점	100점	500점

※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할 경우(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부득이하게 적성 · 소양 평가 및 심충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내신성적(200점 만점)으로만 전형할 수 있음.

- 2) 학과별로 선발하며, 내신성적과 마이스터 적성 및 소양검사, 심충면접을 합한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3) 특별전형, 일반전형 각각 1지망부터 제4지망까지 학과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1지망에서 100%선발하고, 결원 시 2지망, 3지망, 4지망 순으로 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4) 중학교 내신성적의 산출

가) 교과활동상황의 성적반영기준 및 시기는 졸업예정자 경우 3학년 1학기말 성적까지 반영 하며, 출결상황, 봉사활동 실적, 학교활동 실적 등의 산정기준은 9월 말까지로 한다.
[단 졸업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전 학년의 것(교과활동, 출결, 봉사, 학교활동 실적)을 반영한다.]

나) 교과활동상황 성적(150점 만점)의 산출은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한다.

다) 출결상황 성적의 산출(기본점수 8점 - 20점 만점)

(1) 출결상황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미인정 결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예 :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5회까지 1일로 계산, 학년 단위임)

결석일수	0	1	2	3	4	5	6일 이상	비고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1학년 [6점 만점]	6	5.4	4.8	4.2	3.6	3.0	2.4	
2학년 [7점 만점]	7	6.3	5.6	4.9	4.2	3.5	2.8	
3학년 [7점 만점]	7	6.3	5.6	4.9	4.2	3.5	2.8	

(3) 기타 출결상황 성적의 사정은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과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봉사활동 실적 성적의 산출(기본점수 12점 - 20점 만점)

(1)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2) 봉사활동 실적 성적은 1,2,3학년 3개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4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 점수 20점을 부여한다.

시간	40시간 이상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시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3) 2002학년도 이전졸업자는 1,2,3학년 3년동안 활동실적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간	20시간 이상	19~18	17~16	15~14	13~12	11~10	9~7	6~4	3시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4) 2020.2.29. 이전 졸업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5) 기타 봉사활동 실적의 사정은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과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 학교활동 실적의 성적 산출(기본점수 8점 - 10점 만점)

(1) 학교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 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을 토대로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단, 수상실적은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만을 반영한다.

점수	기본점수	수상실적	자치회임원활동
10점	8점	0.5점/1개	월 평정점 0.1점

(2) 모든 학생의 수상실적은 졸업생, 재학생 구분 없이 교내상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점수는 한 개의 실적에 0.5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한 자치회임원 활동 점수는 3학년 9월말까지 월 0.1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자치회임원활동 시작 후 월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3) 수상실적 가산점은 합산하여 2점, 자치회임원활동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점수 8점을 제외한**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치회임원활동은 전교·학년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에 한하여 월평정하여 산출한다. (단, 동일 기간 동안 임원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반영 한다.)

(5) 기타 자세한 수상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는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과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검정고시 출신자,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등의 내신성적은 별도의 경기도교육청 산출식에 따라 적용한다.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검정고시 출신자,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등의 내신성적은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입 전형을 위한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실시 계획**」과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마이스터 적성·소양평가 점수의 산출

- 가) 자동차·기계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 성검사로 평가
- 나) 언어영역, 수리영역, 공간영역, 집중영역, 직무인성 등
- 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함

7) 심층면접 점수의 산출

- 가) 자동차·기계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진로 적합성을 평가

- 나) 지원분야 이해 및 직업자세, 언어이해 및 자기표현 능력, 인성 및 태도 등
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함
- ※ 심층면접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작성 및 소양평가 직후 서면평가로 실시한다.**
- ※ 작성평가 및 심층면접에 불응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나. 특별전형

- 1)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형한다.
- 2)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은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단, 동일학과만 해당됨,)
- 3) 특별전형에서 결원 발생 시 일반전형 해당학과에서 충원할 수 있다.

다. 동점자 사정 방법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모두 교과활동 상황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일반교과 120점 만점 총점이 높은 자, 3학년, 2학년 순으로 일반교과 활동 성적이 높은 자, 출결사항, 봉사활동, 학교활동실적, 심층면접 등이 높은 자 순으로 사정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120점 만점의 3학년 55% 부여, 2학년 45% 부여)

라.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3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단,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내로 선발한다.
-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마.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4명)

바.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3명)

사.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단, 특수학급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③항에 의거하여 경기도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함)

7. 기타

- 가. 제출한 일체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나. 전염성질환, 정신질환자 등 단체생활 및 기숙사생활에 부적합한 자는 기숙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다.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 이중지원 할 수 없으며, 본교 합격자는 타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이중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 라. 입학허가 예정서(합격통지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마. 입학허가 예정자로 입학 허가 예정서(합격통지서)를 교부받고 입학 수속을 본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 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한 자는 전기학교

- 정시·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정시·추가모집에 재 응시할 수 없다.(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전기 학교 중 전문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와 후기학교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바.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단, 등록 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동록) 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한다.)
- 사.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과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0년 10월 7일

우편 번호 : 17890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 1로 61(비전동)
교무실(☎) : (031) 6591-213~7 행정실 : (031) 6591-204~7 FAX : 651-2515
학교홈페이지 : <http://www.ptmt.hs.kr>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